

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- 법 제56조의2 제1항, 영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11 및 규칙 제20조의2

(1)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- 법 제56조의2 제1항, 영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3 및 규칙 제20조의2

1) 의의 - 법 제56조의2 제1항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"우회덤핑")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

- ①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
-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)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- 영 제71조의2

상기 1)에서 "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① 법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(이하 "덤프방지관세물품"이라 한다)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,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(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② 덤프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프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

덤프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

3) 경미한 변경행위의 등의 판단 - 규칙 제20조의2

1. 상기 2)의 ①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- ① 덤프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

화학성분 차이

- ② 덤프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프 조사대상물품의 관세·통계통합 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
- ③ 덤프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프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프 조사대상 물품의 용도
- ④ 덤프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프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설비 차이
- ⑤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
- ⑥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상기 2)의 ②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- ①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
- ② 제3국에서 덤프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(이하 이 조에서 "단순조립가공물품"이라 한다)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
- ③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프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
- ④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
- ⑤ 법 제51조에 따른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프방지관세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
- ⑥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) 우회덤프 직권조사 사유 - 영 제71조의3

상기 1)의 ②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무역위원회가 덤프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“우회덤프”)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
(2) 우회덤프 조사의 신청 - 영 제71조의4

1) 제출 자료 - 영 제71조의4 제1항

우회덤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- ①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

4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- 법 제56조의2 제1항, 영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11 및 규칙 제20조의2

(1)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- 법 제56조의2 제1항, 영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3 및 규칙 제20조의2

1) 의의 - 법 제56조의2 제1항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“우회덤핑”)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

- ①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
-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)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- 영 제71조의2

상기 1)에서 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①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(이하 “덤핑방지관세물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,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(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②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

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

3) 경미한 변경행위의 등의 판단 - 규칙 제20조의2

1. 상기 2)의 ①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- ①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
- ②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
- ③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용도
- ④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설비 차이
- ⑤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
- ⑥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상기 2)의 ②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- ①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
- ②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(이하 이 조에서 “단순조립가공물품”이라 한다)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
- ③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
- ④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
- ⑤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
- ⑥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)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- 영 제71조의3

상기 1)의 ②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“우회덤핑”)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